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0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1월 일

발 의 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에 따른 징계 유형 중 출석정지, 공개회의에
서의 경고 또는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
수당을 합리적으로 감액하거나, 회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
에는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
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, 하남시
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¹⁾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지급
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신설(안 제6조)
- 나.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함[별표 1]
 - 월정수당 : 월 2,608,380원 → 월 2,654,030원

1) 정책기획관-193046(“하남시의회의원 2023년~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알람“, 2022. 11.11.)

3. 검토의견

▶ 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제2항, 제3항 <신설>

가. 입법 필요성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. 이에 따른, 지방의회의 다른 위상과 책임성 강화.
의원의 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법(「지방자치법 제100조」²⁾)이 정한 징계 처분과 연계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.
- 현행 조례는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명확치 않음.
국민권익위에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의 조항을 권고하고 있으며, 청렴도 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징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감액, 지급 제한 및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에서 규정한 징계 유형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·지급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상위법 체계에 부합함.
- 징계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, 공개회의에서의 경고·사과 등 징계의 경중에 따라 감액 비율과 지급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됨.

2) 지방자치법 제100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4. 제명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제10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징계와 의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임.
- 의정비 감액 및 환수는 징계 처분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,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▶ [별표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<개정>

-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조례 반영 필요.
「지방자치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해당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로 사료됨.

라. 종합의견

- ‘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’의 경우, 상위법을 근거로 징계의 비례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- ‘월정수당 인상’과 관련한 [별표1]의 개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.